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-101호

「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1월 2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지봉 이수광이 순천부사 재임 중 청렴정신·적폐청산의 의미를 담아 복원한 팔마비 앞에서 순천시장, 순천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취임선서를 함으로써
- 팔마정신을 계승·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시민과 약속하도록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(안 제2조) 선서 대상자 : 순천시장, 순천시의회 의원
- (안 제3조) 선서 시기·장소 : 취임선서, 팔마비 일원
- (안 제4조) 선서방법
- (안 제5조) 보궐선거 당선자의 선서
- (안 제6조·제7조) 선서문 및 선서문의 보관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1. 23. ~ 2017. 11. 27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취임선서 대상) 이 조례에 따라 취임선서(이하 “선서”라 한다)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2. 순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

제3조(선서시기 및 장소) ① 선서대상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.

② 선서는 순천시 중앙로 95(영동)에 위치한 팔마비 일원에서 거행한다.

제4조(선서방법) ① 선서는 공개로 하고, 팔마비에서 경건하게 서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어 선서문을 낭독한다.

② 선서는 시장, 시의원 순으로 한다.

③ 시의원의 선서문 낭독은 대표자 1명이 하고, 최다선 연장자가 대표자가 된다. 다만, 순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선출된 경우 의장이 대표자가 된다.

제5조(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, 시의원의 선서) 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선서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다.

②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의 선서는 당선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본회의 일에 실시하되, 제3조제2항의 장소에서 선서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선서 방법은 제4조제1항을 따르며, 선서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4조제3항의 전단을 따른다.

제6조(선서문) ① 시장의 선서문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

② 시의원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

제7조(선서문 보관) 선서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그 사본을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서 각각 보관하게 하고, 원본은 본인이 소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